

2020년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수정)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지역 특화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2020년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지역 특화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개발하여 제주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 활성화 및 지역콘텐츠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0년 11월 15일(예정)
- 지원규모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4건 x 175,000천원

3. 지원내용

구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제주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 등록을 완료 하였으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div>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정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 컨소시엄 구성시, 제주지역 기업이 주관기관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상용화 기술 및 콘텐츠 개발·제작 전문인력이 최소 3명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이어야 함
- 1개 법인(기업)당 1개 지원 신청서만 제출가능(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7억원 이내(과제당 175,000,000원 이내 지원, 4개 과제 내외)

지원금	민간부담금(자부담)
175,000천원(금일억칠천오백만원) x 4개과제	지원금의 10%이상 ※ 17,500천원(일천칠백오십만원)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개수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제주지역 특화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지원

지역 특화성: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지원분야 :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포함

지원제외분야: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등 문화예술, 공예, 문화재, 게임제외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의하는 문화산업 중 타 부처 및 타 기관이 전담하는 분야는 제외

<중점방향 및 사항>

- 제주지역의 특화성을 활용한 특색있는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국내외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상용화 추진(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참고: 2020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선정과제>



꽃자왈을 소재로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비밀의 바람숲' (7분 x 12편)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내에 제작 완료 가능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1식 • 신규 인력채용 1명 이상 필수 •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1건 필수 • 2020 넥스트콘텐츠페어 참가 필수 ※ 선정된 기업은 넥스트콘텐츠페어 부스 임차료 비용 예산(5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p>참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연도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2개 제한(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3개년 수행 및 신청 금액 25억 초과 제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 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p>신청서 접수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기간 : 2020. 05. 06.(수) ~ 2020. 05. 25.(월) 14:00 / 20일간 • e나라도움 접수기간 : 2020. 05. 11.(월) ~ 2020. 05. 25.(월) 14:00까지 / 15일간 • e나라도움 접수 후, 신청서 서면제출일 : 2020. 05. 27.(수) 09:00 ~ 18:00 / 당일만접수 ※ 2020.05.26.(화) 접수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 ▶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해야 함 ▶ 마감당일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접수진행 권장함 ※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 절대 접수 불가 ▶ e나라도움을 통한 미접수시, 오프라인 서류만 제출하여도 접수 불가(e나라도움 및 서면 제출을 모두하여야 함) </div>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면 제출(모두 필수)

①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제주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버튼 클릭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② 오프라인 접수(신청서 서면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제본하여 서면 제출
- 좌절 제본 원칙 → ① 총 9부 제출(원본 1부, 제본 8부), ② 제출폴더양식zip폴더를 USB 1식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 제출일시: 2020. 05. 27.(수) 09:00 ~ 18:00까지(제출시간 엄수, 당일만 접수) / 2020. 05. 26.(화) 접수 불가
- ※ 제출장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 1층(제주시 첨단로 213-65)
- ※ 제출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과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
 - 방문 접수시, 접수증 배부 예정이며, 심의위원 추천표 작성 예정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포함 총 15개 (필수제출 기준)

신청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 형식	유의사항
1	과제신청서	pdf, hwp (둘다제출)	○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수행기관 소개서(주관, 참여)	한글파일 (hwp)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3	정부지원 수혜실적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5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확인서	pdf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6	사업자부담금 약약서	한글파일 (hwp)	○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7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8	위탁사업 계획서		○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9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지정양식)	○ 각 기관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참여인력 이력	한글파일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11	재무제표(최근2년)		○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2	성폭력 관련 사실확인서		○ 최근2년(2018,2019년) 재무제표
13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소재지 확인용)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15	4대보험 납입증명 (일자리창출 확인용)		○ 각 기관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6	선택제출서류		○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이 기 완성된 자료 포함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40%)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60%)

구분	중간평가 점수	2차 지원금 지급	비고
합격	60점 이상	2차 지원금(6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불량	60점 미만	과제실패 및 탈락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사업비 산정기준)참고
 - 인건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총 사업비의 40%이내)
 - ※신규채용은 협약 후 3개월 이내 채용
 - ※본 사업은 원거리 인력, 본사 근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편성 불가.
(본사 또는 지사가 제주지역에 위치하여 선정되었는데, 타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 불가)
 - 신규채용은 협약일 이후, 채용에 대해서만 인정함
 - 일반·관리 용역비: 총사업비의 40%이내 편성가능
 - 자산취득 편성 불가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부동산 임차료, 공과금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비용 지출불가
 - 국외여비 편성 불가
 - 행사홍보비로 넥스트콘텐츠페어 이외의 국내외 시연행사(예시: 캐릭터라이선싱페어, G-STAR 등) 참여 불가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 부담, 사업비로 집행 불가)
 - 협약일 이후 집행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소급 불가)
-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
 - 주관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액 집행 하여야 하며,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관련

지원제외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법정관리 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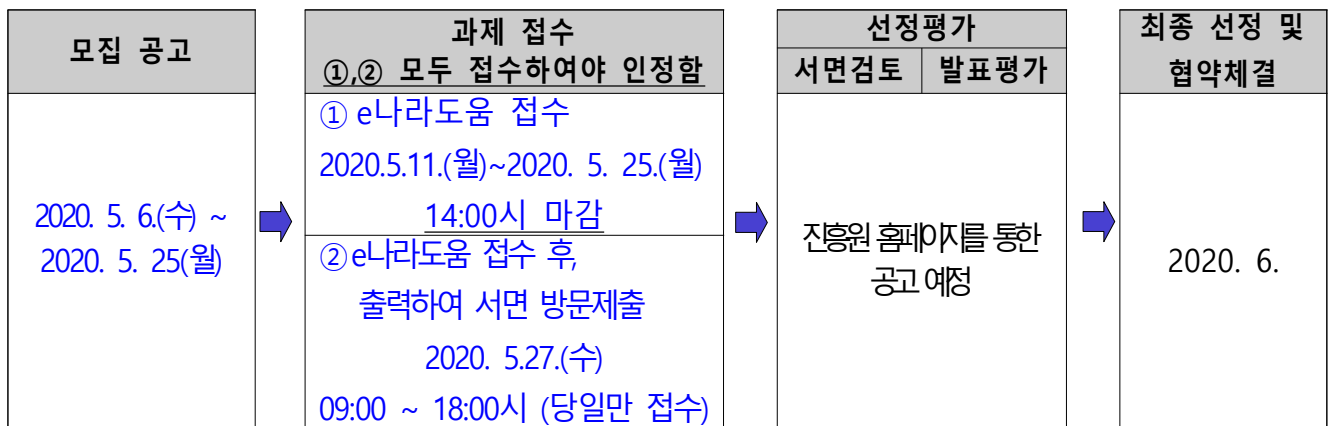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 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컨소시엄 내 한 개 기관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2020.11.15.)까지 콘텐츠 제작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 하고, 2020.11.16.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2020.11.15.)로부터 5일 이내(2020.11.20.)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증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함
 - 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진행
-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선정 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 1개의 기업당 1개 과제계획서 지원가능(내용이 다른 과제수행계획서라도 중복 지원불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 책임

구분	역할과 책임
주관기관· 참여기관 (콘텐츠기업)	<p>[과제추진 및 관리]</p> <p>① 지원과제 계획수립 및 추진</p> <p>[과제수행]</p> <p>② 지원과제의 제작과 사업화에 대한 제반업무 수행, 과제의 성공을 위한 공동협력 및 신의성실에 기반한 노력</p> <p>③ 지원과제 수행 전반의 보조금법령 등의 제반법령, 규정 준수</p> <p>④ 예산의 적절한 집행 및 정산, 사업수행상황보고(주관기관),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p> <p>[예산투입]</p> <p>⑤ 사업비 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책임</p> <p>[사업화 등 성과 활성화]</p> <p>⑥ 지원과제를 활용한 성과전시(행사), 컨설팅, IR, 교육 등 사업화지원에 참여</p> <p>⑦ 지원과제의 사업화, 홍보 촉진 및 지원사항 고지의무</p> <p>※ 상기사항 외 역할과 책임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근거함</p>

4. 평가방법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자)에게 개별 통보

※ 필요시, 최종 선정 이전에 현장실사 가능

○ 선정기준

- 서면검토: 서면검토를 통해 적부판정을 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과제선정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예시) 87.978점 → 87.98점

※ 평균점수 동일 시, 고배점 평가항목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의 동점이 2개 이상으로 집계 될 시, 1개만 제외함

(예시: 평가위원 중 3명이 동일한 과제에 대해 최저점40점을 주는 경우, 동점 1개만 제외하고 합산)

※ 평가위원이 5인일 경우,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를 산정

- 최종선정: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후순위과제 포함 가능)

※ 장르별 과제 쿼터제 및 평가분과 운영 가능

※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 평가 시, 공정평가담당관(심사평가 음부즈만)제도 도입(예정)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20분 이내(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 책임자

○ 평가위원 선정방법

- 우리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된 과제 분야에 따른 전문 심의위원풀(3배수)을 구성한 후, 신청자가 과제계획서 서면 제출을 위해 방문하였을 시, 심의위원 추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추천표를 합산하여 추천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 위원으로 우선 선정 하고자 함.
- 접수되는 과제 분야에 따라 분야별 과제 쿼터제 및 평가분과 운영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과제내용 (30점)	- 완성도 - 대중성(상업성) - 독창성 - 사업화	- 본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하며,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기획하였는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 - 타 산업(관광업 등) 연계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하며, 흥행성 및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가?	30
기대성과 (40점)	- 지역기여도 - 사회적 파급력	-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0
	- 경제적 성과	- 본 과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 - 본 과제를 통한 구체적인 상용화(판매, 방영, 출판 등)와 매출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20
사업비의 적정성 (15점)	- 사업비 규모 - 사업비 조달계획 - 사업비 편성	- 과제 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 - 자부담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 - 사업비 편성내역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가?	15
수행기관 역량 (15점)	- 추진의지 - 기관전문성 - 관리역량 - 재무건정성	- 본 과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한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기획 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는가?	15
합계(100점)			100

5.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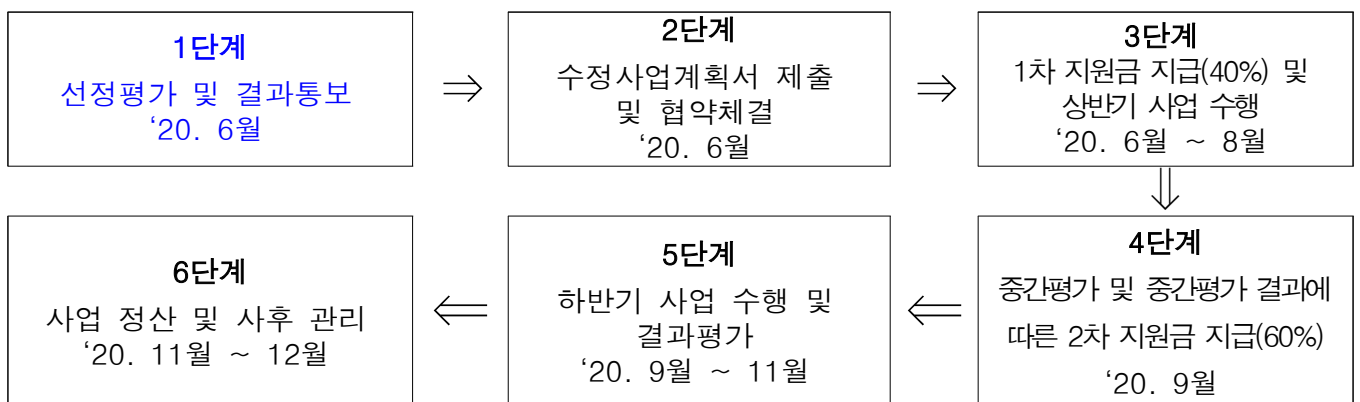
-사업 관련 문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박지혜 주임연구원

☎ Tel : 064) 735-0617 / ✉ E-mail : jihye@ofjeju.kr

-e나라도움 관련 문의:☎ Tel 1670-9595 / 홈페이지 : <http://www.gosims.go.kr/>

6. 정산 및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절차



○ 정산내역 증빙자료 :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 안내서] 참조

7.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수익(지원사업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를 기술료로 징수함
-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참여기관은 전년도에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및 확정된 기술료를 당해 연도 진흥원이 정한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관련 내용 확인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20년 5월 7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